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제도 해설 (I)



김영욱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화재특종보험부장〉

1. 화재보험의 약관과 요율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이재위험을 계량하고 이에 따르는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약금을 분담하여 단체적인 경제준비를 마련하는 경제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인 보험회사가 우연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 하며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이에 상응한 보수인 보험료를 제공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때의 사고발생에 대비한 약정을 쉽게 밀해서 보험약관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한 대가를 보험료로 생각하면 이해가 용이할 것으로 안다. 이는 일반제품에서의 상품과 가격의 관계로도 풀 수 있는 바 화재보험요율이란 화재보험이라는 상품의 단가로 보면 좋을 듯 하다. 다시 말하면 화재보험요율이란 화재보험단위에 부과하는 보험가격을 말하고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인 백분율 혹은 천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2. 화재보험요율의 종류

위와 같은 화재보험요율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바 보험요율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가 여부에 관련하여 비인가요율, 즉 자유요율과 반드시 인가를 필하여야 되는 인가요율이 있다. 여기에서 비인가요율인 순수한 의미에서 자유요율이란 보험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은 그 약관이 국문증권이든 영문증권이든 간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유요율은 없고 모두 인가요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시 당해 보험의 목적을 인수함에 있어 그 위험도를 측정,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가가 불필요한 자유경쟁요율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인가요율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표준적인 요율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표준적인 요율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가감하여 그 가감의 범위는 미리 인가를 받든지 하는 방법과 보험자간의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지양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협정요율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보험요율 중에서 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통칭 국문증권)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요율은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의 산정 및 조정대상으로서 협정요율의 일종으로 인가요율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F.O.C증권(통칭 영문증권)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요율은 이미 그 범위를 정하여서 인가되어 있고 그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별도의 인가가 필요한 인가요율의

한 형태이지만 범위요율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같은 범위요율은 표준적인 요율에다가 그 가감의 범위를 정하는 다른 형태의 범위요율과는 그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요율은 그 약관이 국문증권이든 영문증권이든 간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유요율은 없고 모두 인가요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화재보험요율의 일반원칙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요율을 산정하는 4대 원칙으로 적정성, 공평성, 경제성, 예방성을 열거하는 바 적정성이란 보험료의 결정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대한 지급에 충분하지만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보험료가 불충분하면 보험자의 지급불능을 초래하여 오히려 다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부담을 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예정손해율과 실제손해율의 현실적인 접근치로 유도시켜야 된다는 뜻이며, 공평성이란 현실적으로 비슷한 위험의 다수의 동질 위험집단에 속하는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경제성이란 보험계약자의 소득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판매가격인 보험료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보범위의 확대, 축소 및 보상한도액이나 기초공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담의 신축성을 기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예방성이란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사고예방능력을 유도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있어 소화설비활인제, 위험품활증제 등의 방책이 요율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원칙에 의한 기초통계 및 경험통계에 의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요율이 산정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보험원가는 미래를 예측하여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사업비 등의 변동요인을 흡수하여 보험사업의 안전성유지를 물론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예정손해율 및 예정사업비율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별로 요율검증제도를 실시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요율검증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계속>